프라이빗 신탁회사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목적과 구조

프라이빗 신탁회사(private trust company, PTC)는 한 가문의 신탁을 위한 수탁자로 활동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주식은 보통 목적신탁, 재단 또는 전문 수탁자가 있는 지주신탁이 보유하며, 이사회는 가족 구성원, 신뢰할 수 있는 자문가 및 독립 이사로 구성됩니다. PTC를 통해 가문은 위탁자 개인에게 권한을 유보하지 않고도 분배를 포함한 신탁 관련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PTC의 이사회는 수탁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수익자에 대해 수탁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로써 가문은 책임성의 틀 안에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장점은 지배구조와 연속성에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은 수탁 업무를 익히고 창업자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문을 잘 아는 자문가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가문이 자신의 수탁자를 지배하므로 전문 신탁회사의 소유권 변동이 더 이상 구조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단점은 비용과 책임입니다. PTC에는 자체 이사회 회의, 의사록, 회계 및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인 이사는 전문 수탁자라면 피했을 신탁위반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면제와 그 조건

싱가포르 법은 PTC를 허용하고 라이선스를 면제하므로, PTC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를 수행하도록 라이선스 신탁회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MAS는 이 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신탁회사는 "AML/CFT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라이선스 신탁회사를 선임하여야 한다(must engage a licensed trust company to meet AML/CFT requirements)"는 것입니다.[1]

이 조건이 싱가포르 모델을 규정합니다. 가문은 수탁자로서의 결정을 유지하고, 규제받는 기관이 고객확인을 수행하며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의심거래를 보고합니다. 감독은 PTC를 지원하는 라이선스 신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PTC에 미칩니다. 이 모델은 면제 PTC를 라이선스를 받은 수탁업자가 관리하는 저지와 건지의 실무와 유사합니다. 홍콩에는 별도의 체계가 없어 홍콩 가문들은 보통 다른 관할권에 PTC를 설립합니다.[2]

PTC는 누가 보유하는가?

PTC의 소유는 싱가포르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문이 주식을 직접 보유하면 그 주식은 가족 구성원의 개인 자산 및 상속재산의 일부가 되어, PTC가 그들의 채권자와 상속 분쟁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인 해결책은 PTC를 소유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비공익 목적신탁이나 재단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법은 비공익 목적신탁도, 사적 재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문들은 저지, 건지, 케이맨 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목적신탁을 통해, 또는 리히텐슈타인, 저지 또는 파나마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을 통해 싱가포르 PTC를 보유합니다.

그 결과 역외의 최상위 계층과 싱가포르의 운영 계층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무가들은 이 구조가 비용과 두 번째 자문단을 추가하기는 하지만 실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는 싱가포르 구조를 규제기관, 은행 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는 법원에 싱가포르 법만으로 항상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비판자들은 목적신탁의 부재를 싱가포르가 아직 독자적인 완전한 신탁 중심지가 되지 못한 주된 이유로 봅니다.

PTC가 적합한 경우

PTC는 상당하고 복잡한 자산을 가진 가문, 전형적으로는 운영 사업, 여러 개의 신탁, 그리고 지배구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친족을 둔 가문에 적합합니다. 자산이 은행 계좌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진 가문에는 덜 적합합니다. 그러한 가문에는 수탁자로 활동하는 라이선스 신탁회사가 더 낮은 비용으로 같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실무상 싱가포르의 많은 PTC는 신탁의 투자를 관리하는 싱글 패밀리오피스와 나란히 존재합니다. 이 편의 제III장에서 검토하는 패밀리오피스 제도는 그러한 투자를 위해 펀드 기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구로는 점점 더 가변자본회사(Variable Capital Company, VCC)가 쓰이고 있습니다.

주

1. Bedell Cristin, "Jurisdictional Comparison" (2020년 8월), 앞의 주, 항목 (17): Trust Companies (Exemptions) Regulations 및 Trust Companies Act; MAS에 등록할 의무는 없으나 PTC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라이선스 신탁회사를 선임하여야 함. MAS, "Licensed Trust Companies", 앞의 주. ↩

2. Bedell Cristin, "Jurisdictional Comparison" (2020년 8월), 앞의 주, 항목 (17) 및 (21): 저지의 면제 PTC는 신탁회사업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관리하여야 함; 건지의 면제 PTC는 Fiduciaries Law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가 관리하여야 함; 홍콩에는 별도의 입법이 없으며, 홍콩 구조를 위한 PTC는 일반적으로 다른 역외 관할권에 설립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